국방부 고시 제2014-177호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⑤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한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고 시 명 : 2014년도 국방부 기록관리기준표

□ 고 시 일 : 2014. 6.30.(월)

□ 주관 부서 :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(☎ 02-748-5031)

2014년 6월30일

국 방 부 장 관

■ 2014년도 국방부 기록관리기준표

순번	단위과제명	단위과제 업무설명	보존기간	보존기간 책정사유
1	**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정책**	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정책, 제도개선	준영구	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정책, 제도 개선 등의 업무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 기간을 필요로 함
2	**나라사랑 교육**	청소년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지원	3년	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사업으로 3년 정도 보존 필요
3	**표장관리**	국방부 및 각군 표장권리 보호	10년	국방부 및 각 군의 표장관리 업무로 10년 정도 보존 필요
4	**국방 3.0**	정부3.0에 호응하는 국방3.0업무로서 국방부 자체 추진 업무	5년	정부 추진 과제에 대한 기관 추진 업무로서 5년 정도 보존 필요
5	**국민대통합 업무**	정부 지향 국정업무인 국민대통합 업무에 대한 국방부 자체 추진	10년	각 기관 공통 추진 업무로서 10년 정도 보존 필요
6	**정책실명제**	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정책실명제 추진업무	5년	각 기관 공통 추진 업무로서 5년 정도 보존 필요